

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6-67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91-1 ~ 공릉동 382 일대 한천교 확장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(도로) (변경)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를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27일
노 원 구 청 장

1. 결정 취지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, 도시계획시설(도로)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

2.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

－ 도로 변경 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(m ²)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83	20~22	집산 도로	1,800	월계동 (중1-182)	공릉동 (중2-124)	일반 도로	-	서고제387호 (78.8.3.)	중복결정 －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: 2,579
변경	중로	1	83	20~29	집산 도로	1,800	월계동 (중1-182)	공릉동 (중2-124)	일반 도로	-	서고제387호 (78.8.3.)	중복결정 －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: 2,579 － 교통시설 도로(대2-86):223 － 교통시설 도로(중1-334):1,150 － 공간시설 소공원:329 － 방재시설 방수설비 : 10

－ 도로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 1-83	중로 1-83	· 폭원 변경 － 폭원 20~22m→20~29m	· 한천교 차로 확장을 통한 교통처리능력 증대 및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더불어, 섬발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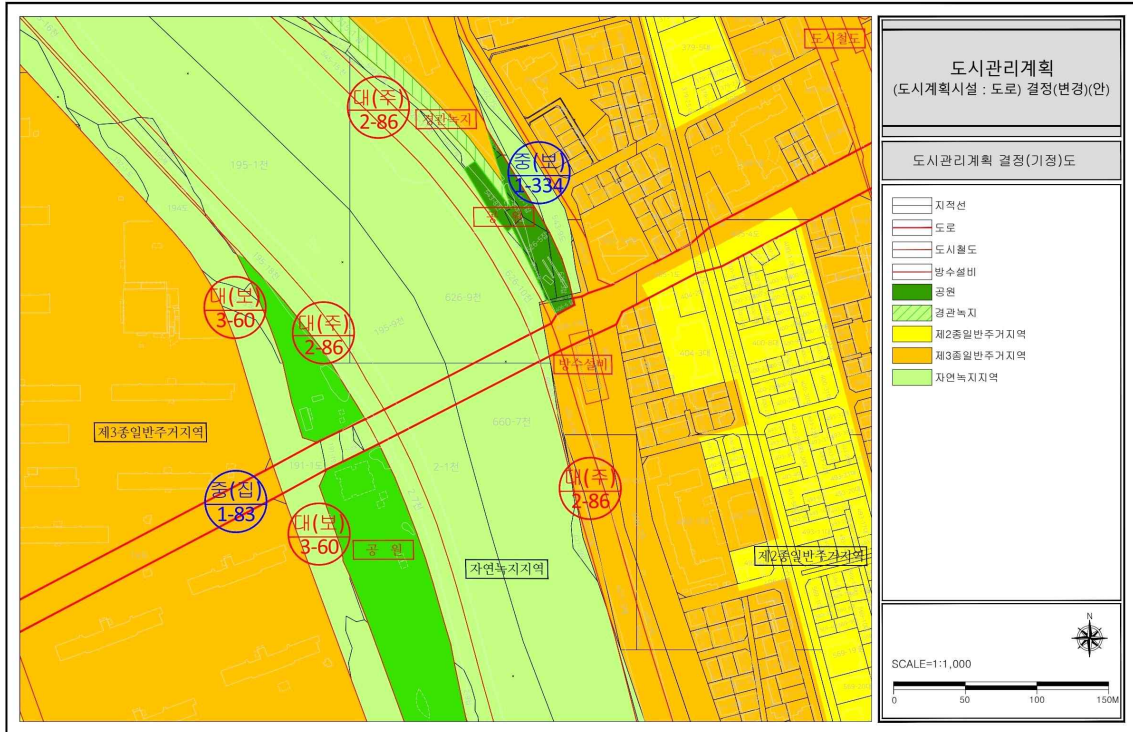
3. 관계도면 : 붙임참조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열람장소 : 노원구청 도시관리과(☎02-2116-3861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기정>



<변경>

